

UN 장애인 특별보고관 제4차 보고서 요약

1. 보고서 개요

- 1993.12 제48차 유엔총회는 “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기본원칙”(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)을 채택하였으며, UN 사회개발 위원회가 동 규칙의 이행과정을 감시하되,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기본원칙의 이행 및 발전에 대해 보고토록 규정
- 상기총회 결의에 따라, 1994년 3년임기의 Bengt Lindqvist 장애인 특별보고관이 임명되고 동인의 임기는 2차례 연장
- 특별보고관은 1995년 제 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총 3차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, 동인의 2000-2002 세 번째 임기동안의 보고서인 제4차 보고서는 상기 “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”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, 동 보고서는 2004년 제42차 사회개발위원회에 제출될 예정

2. 보고서 주요 내용

가. 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 보완

- 1993년에 채택된 “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”은 장애아동, 장애와 빈곤의 악순환,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, 정신지체장애 및 발달장애인의 자결권등 장애인 인권보호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, 동 기본원칙의 보완이 필요

나. 장애인 인권 : Twin-Track Approach

-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장애관련 문제들을 “사회복지의 차원”에서 규정하였던 관습에서 벗어나, 1970-80년대에 들어 장애인을 “권리의 주체”로 인식하고 장애인 인권을 논의하기 시작
 - 장애인 권리선언(1975), “장애자의 해”선언(1981), “장애인 행동계획”(1982),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기본원칙(1993)
- 장애인 인권에 관한 초기논의는 “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”을 이행하면서 기존의 (6대) 인권협약의 모니터링 시스템내에서 동 원칙이 이행되는지 감시하는데 중점을 둠.
 - 1984년 소수민 차별금지 및 보호 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으며 동안은 장애문제는 UN 인권협약기구가 관여하여야 하는 인권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
 - 1994년 A규약(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)위원회는 General Comment를 통해 동규약을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
 - 1998년 제54차 인권위원회 결의 및 2000년 제56차 인권위원회 결의(2000/51)는 UN 시스템상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, 특히 제56차 인권위 결의는 “모든 인권협약감시기구는 회원국 정부가 협약상의 권리를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인정토록 하고 협약관련 보고서 제출시 장애인 관련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”

- 2000년에 들어서 “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” 등 장애인관련 규범이 비구속적이고 UN 인권협약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애인 인권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
 - 2001년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은 6대인권협약과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
 - 장애인 행동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및 UN 장애인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는 모두 장애인 관련 별도 협약체결을 제안
- 2002년 유엔총회는 멕시코측의 주장으로 장애인 권리협약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으며, 2003년까지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장애인 협약 초안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합의
- Twin-Track Approach
 - 장애인 권리협약이 마련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, 장애인권리협약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UN 인권협약 감시체제내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이행을 감시

다. UN 시스템 협력 강화

- 장애인의 충분한 권리보호를 위해 UN 인권관련 기구간 정보교환 및 협력의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UN 사무국(DESA)의 “Program on Disability”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
- “UN 장애인 십년계획”상의 기관간 협력체제가 다시 설치되어, 기관간 정례회동이 개최될 필요

라. 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 모니터링

- 장애인의 실태를 평가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모니터링 체제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기본원칙상 규정되어 있는 Panel of Expert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
 - 1994년 구성된 Panel of Expert에는 Disabled People's International, Rehabilitation 등 총 6개 장애인 NGO 단체가 참여하여 기본원칙의 이행감사를 지원
- 향후 바람직한 모니터링 체제는 ① 새로운 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② UN 사무국내 고위 자문관 임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Panel of Experts 제도는 유지

3. 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 보완관련 상세 권고사항

○ 장애인 분류

- 장애인의 개념정의 및 분류시 2001년 WHO 총회에서 채택된 “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, Disability and Health”를 도입하여, 장애의 원칙을 신체적·개인적·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

○ 빈곤과 장애

- 빈곤과 장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프로그램 도입이 필수적이며, 동 프로그램은 충분한 의식주 보장을 반드시 포함
- 장애인의 생활여건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제공

○ 주거보장

-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을 지양하되,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기본욕구들이 충족되고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
- 특히,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, 부모가 없는 경우에도 집단 수용시설 보다는 Substitute Families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

○ 보건 및 의료서비스

- 의료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권리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
- 생명권, Informed Consent (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), 강제적인 진료거부권, 강제수용시설 거부권, 강제수용시설 거부권
-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 장애인들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제공
- 생식보건(Reproductive Health)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제공

○ 비상사태 지원

- 비상사태(난민의 경우등)에 처한 장애인들에게 대한 지원조치 강화

○ 접근성(Accessibility)

- “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”에는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권 및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,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접근권 규정이 부재
- 무지나 편견에서 비롯된 모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, 특히, 발달장애·정신지체장애, 장애아동, 다중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선시

○ 정보통신

-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의 편의도모에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
- 수화를 공식인정하여 청각장애인 교육에 활용
- 통역서비스 및 기타 통신장비·도구 개발

○ 인적개발 및 훈련

- 장애인 지원인력 개발 및 의사·교사·사회봉사자등 전문가에 대한 훈련
- 장애인 본인들이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·훈련

○ 여성장애인

-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철폐 → *여성 장애인 차별철폐*
-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에 장애여성들이 주요수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
- 장애인관련 NGO 들의 활동에도 여성장애인의 요구를 반영 *(장애, 장애인에 관한 것)*

○ 장애아동 및 가정

-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되, 동 서비스 지원이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
-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
- 작업장에서는 고용주가 장애인인 피고용인의 가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
→ *2014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*

○ 폭력·학대

- 장애인들이 폭력·학대를 예방할 수 있고, 폭력·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
- 경찰·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교육 및 훈련
- 장애인들의 사생활 및 인신의 자유 등을 보호하는 입법을 마련

○ 고령화

- “장애인 기회균등 기본원칙”은 연령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고령장애인가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
- 특히, 의료서비스, 재활서비스, 각종 지원보조도구등의 제공등에 있어 고령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, 고령장애인가구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및 인식제고 캠페인 전개가 필요
→ *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*

○ 무형의 장애

- 정신지체장애·발달장애, 만성질병에 따른 장애, 청각장애등이 무형의 장애에 속하는 바, 이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

○ 정부정책 및 입법조치

- 포괄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
- 의료 보조 도구 및 시설 제공
- 장애인들의 접근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고, 교통, 주택, 정보통신시스템 개발시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
- 국제적인 연구조사활동 증진
- 인권협약 보고서 제출시 장애인 관련 내용 포함. 끝.